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충청북도의회사사무처장및소방서장"을 "충청북도의회사사무처장·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"으로 한다.

제2조제5항중 "별표5"를 "별표6"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중 "별표4"를 "별표5"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.

제5조중 "충청북도의회사사무처장및소방서장"을 "충청북도의회사사무처장·소방서장"으로 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1) 권한위임 사무중 환경지도과 소관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 아 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관 련 규 정
환경지도과	6	○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 (단,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) 가. 운행차 점검 실시 나. 운행차 개선명령,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수리	소음진동규제법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
	9	○ 과태료의 부과, 징수 (단,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)	소음진동규제법제6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